나의 사촌 비니

□ 형사소송절차 서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당사자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민사 사건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국가에서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로 형벌을 가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이를 조사하는 절차인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고 기소를 거쳐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형사사건의 절차를 살펴보겠다.

□ 수사절차

I. 수사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써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1.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의 종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 (1)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관, 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 제외),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2)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3) 특별사법경찰관리 :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

Ⅱ. 수사의 시작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1. 고소

-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 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2)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3)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 (4)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5)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2. 고발

- (1)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2)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 (3)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목차

- □ 형사소송절차 서론
- □ 수사절차
- □ 재판절차

NOTE

3. 진정 및 탄원

- (1)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 (2)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 (3)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 4.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 (1)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2)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 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Ⅲ. 수사의 진행

1. 현장출동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 등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 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 2. 피의자 신병 확보절차
- (1)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준현행범: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i)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ii)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iii)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iv)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 준현행범으로 본다.

(2)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더 알아보기

□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 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 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NOTE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 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한다.

(4) 기소중지자 검거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한다.

- ① 지명수배자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 된 자
- ②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 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③ 지명통보자 :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3.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와 체포의 통지
- (1) 미란다 원칙 : 피의자를 체포한 때,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체포의 통지: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 중지자 검거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 매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체포 후의 조치

- (1) 피의자 체포 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 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 (3) 구속이 불필요한 때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의자를 석방한다.
- (4) 피의자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 5.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
- (1) 구속영장 실질심사
-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 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 다.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Ⅳ. 수사의 종료
- 1.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 (1)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 (2) 다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사건의 경우에 검사는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 사건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서장이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수 사 절차가 종결되기도 한다.
- 2.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 (1)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지만 범죄 사실이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친고죄에 있어 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

더 알아보기

□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3년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국에 지명 수배를 한다. 지명 수배자가 검 거되면 긴급 체포되어 수배 관 서로 넘겨진다.

반대로 3년 미만의 형벌이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에지명 통보를 하게 된다. 지명통보자가 검거되면 긴급 체포되지는 않지만 수배 관서로 한 달이내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지명 수배자로 지목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 된다.

NOTE



는 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수사 결과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항고·재항고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이 검찰 내부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항고·재항고 제도이다.

(4) 재정신청

- ①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그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고등법원은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재판절차

I. 공판준비절차(임의적 절차)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공판을 열기 전에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주도하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들어 사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Ⅱ. 공판기일절차

공판준비절차 등이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 이를 검사와 피고인 측에게 알려주게 된다.

1. 모두절차

모두절차는 형사 재판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조사하고 밝히는 절차이다.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변호인의 모두 진술 순서로 진행한다.

2. 사실심리절차

(1)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의 진술(임의적 절차)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

- ① 증거조사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②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수집·검증은 증거 조사가 아니다.
- ③ 증거조사는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증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 만, 당사자에 대하여는 증거의 내용을 알게 하여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 ④ 증거조사는 또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예단이 생긴 판사가 시간 아깝다는 생각으로 검사의 말만 듣고 변호사의 변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피고인신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피고인신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당사자적 지위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래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전에 하게 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와 무죄추정권을 실제화하고 예단배제의 원칙의 강화로 인해 증거조사 후에 한다. 배심원이 공정하게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하려면 심증형성의 초기부터 예단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증거조사 후에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이다.

(4) 최종변론

①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검사의 논고라 하며, 특히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한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

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종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3. 판결선고절차

(1)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한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는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판결의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가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Ⅲ. 법정경찰권

법정경찰권이란,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의 방해를 저지·방해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원의 권력 작용을 말한다. 원래 법정경찰권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질서유지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위하여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